

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

[시행 2019. 4. 1.] [교육부고시 제2019-176호, 2019. 2. 1., 일부개정.]

교육부(학생건강정책과) 044-203-6541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1.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 추가(안 별표1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’18.12.31. 공포 예정)에 따른 후속조치
 -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작성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 기재 항목으로 교지경계선 300미터 이내에 설치·운영중인 위험시설(경마장 장외발매소, 경륜·경정장 장외매장, 사행행위 영업장) 운영현황 포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교지경계선 300미터 이내에 설치·운영중인 위험시설 등을 추가(경마장 장외발매소, 경륜·경정장 장외매장, 사행행위 영업장)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등 추가

2. 교육환경평가 작성 항목 중 일조분석 등 구체화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일조분석은 교사의 개별 창문별로 실시해야 하나, 현행 규정에는 교사의 창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례 차단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(작성)항목 중 일조분석은 교사 각각의 창문을 기준으로 일조면 설정